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직원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1527호
2. 제 출 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3. 제출일자 : 2020. 5. 25.
4. 회부일자 : 2020. 5. 29.

II. 제안이유

1. 우리 교육청에는 교직원단체 뿐 아니라 관계법령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노동조합, 교육공무직노동조합도 활동하고 있으나, 현행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직원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방보조금의 지원대상을 교직원단체로 한정하고 있음
2. 따라서 공무원노동조합과 교육공무직노동조합에도 행·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방보조금 지원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단체 간 형평을 고려하고,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자 함.

Ⅲ. 주요내용

1. 조례명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직원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직원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
2. 지방보조금 지원대상기관을 ‘교직원단체’에서 공무원노동조합과 교육공무직노동조합을 포함한 ‘교직원단체’로 변경(제1조, 제2조)

Ⅳ. 참고사항

1. 관계법규 : 「지방재정법」,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조례안 [별첨 7])
2. 예산조치 : 해당 없음(조례안 [별첨2])
3. 협의 : 감사관, 정책·안전기획관, 예산담당관, 민주시민생활교육과와 협의완료
4. 기타
 - 가. 신·구조문대비표: 조례안 [별첨 1]
 - 나. 입법예고(2020. 2. 21. ~ 3. 12.) :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조례안 [별첨3])
 - 다. 부패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서(조례안 [별첨 4])
 - 라. 성별영향분석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제출 제외 통보 확인서(조례안 [별첨 5])
 - 마. 학생인권영향평가: 조례안 [별첨 6]

바.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교직원단체 현황: 조례안 [별첨 8]

사. 2020년 교직원단체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현황: 조례안 [별첨 9]

V.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김창범)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개정조례안은 2020년 5월 25일 서울특별시교육감에 의해 의안번호 제 1527호로 제출되어 2020년 5월 2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개정조례안은 교직원단체 외의 공무원노동조합 및 교육공무직노동조합에 대해서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직원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교직원단체 현황 및 개정 취지에 대한 검토

- 현행 조례 제2조는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으로 “1. 「교육기본법」 제15조제1항에 해당하는 교원단체 및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교원노동조합”과 “2. 그 밖에 교원의 전문성 향상 및 교육활동 개선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교원과 퇴직교원으로 구성된 단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2020년에 [표1]과 같이 교직원단체에게 지방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표1] 2020년 교직원단체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

교직원단체명	세 부 내 역 (단위: 천원)			
	보조사업명	예산편성액	집행액	집행잔액
서울특별시교원단체총연합회 (서울교총)	서울현장교육연구대회	20,000	-	20,000
	은사와 함께하는 새내기교사 대회	30,000	-	30,000
전국교직원노동조합서울지부 (전교조)	어린이 날 기념사업	20,000	20,000	-
	학생의 날 기념사업	20,000	-	20,000

교직원단체명	세 부 내 역 (단위: 천원)			
	보조사업명	예산편성액	집행액	집행잔액
서울교사노동조합 (서울교사노조)	평화통일교육 수업 지원	15,000	-	15,000
	불어라 책바람	20,000	-	20,000
한국교원노동조합 서울본부 (한교조)	장애아동캠프	17,300	-	17,300
대한민국교원조합 서울지부 (대한교조)	다문화가정 학생 초청 한국역사·문화체험	9,000	-	9,000
계		151,300	20,000	131,300

○ 이러한 지방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현행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과 제32조의2제6항은¹⁾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 1)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 ③ 삭제 <2013. 7. 16.>
- 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지방보조금(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출 또는 교부받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성격, 지방보조사업자(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비용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절한 수준으로 책정되어야 한다.
- ②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제3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2.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3.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의견을 제출할 때
 4.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5. 제32조의7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를 결정할 때
- ④ 지방보조금은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제3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령이나 법령의 명시적 위임에 따른 조례에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2.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어야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현행 조례가 교직원단체만을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노동조합과 교육공무직노동조합 등은 지방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없는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표2] 교육청 교직원단체 현황

구분	노동조합명	설립연도
교직원단체 (5)	서울특별시교원단체총연합회	1947.06.18
	서울교사노동조합	2016.12.08
	한국교원노동조합 서울본부	1999.07.01
	대한민국교원조합 서울지부	2008.12.05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1999.07.01
공무원노조 (7)	서울특별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2006.02.22
	서울특별시교육청일반직공무원노동조합	2011.11.07
	한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시교육청지부	2006.02.02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서울시교육청지부	2007.12.06
	서울특별시교육청사서노동조합	2012.05.18
	전국시·도교육청일반직공무원노동조합 서울시교육청지부	2012.01.16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 서울시교육청지부	2016.10.10
교육공무직노조 (5)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2011.07.13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	2006.11.30
	전국여성노동조합	1999.08.30
	민주노총 서울본부 서울일반노동조합 학교급식지부	2001.01.07
	서울시공립학교교보봉제회계직	2014.08.26

○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이 교직원단체와 공무원노조 및 교육공무직노조 등을 차별하지 않고 지방보조금을 통한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은 「대한민국헌법」 제11조 및 제33조가 보장하는 평등의 원칙과 근로 3권의 측면에서 타당한 입법적 조치로 생각됩니다.2)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이 중복 교부되거나 부적격자에게 교부되지 아니하도록 지원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⑥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교부 신청과 교부 결정 등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 참고로 서울특별시의 경우 공무원노동조합 등이 지방보조금을 신청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나. 주요 조문별 검토

○ 이에 따라 동 개정조례안은 제1조부터 제5조까지 현재 “교직”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교직원”으로 개정하면서 안 제2조제2호와 제3호에서 지방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으로 공무원노조와 교육공무직노조를 명시하였는바, 조례 개정에 따른 별도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직원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법령

지방재정법

[시행 2020. 6. 9.] [법률 제17390호, 2020. 6. 9., 일부개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공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2013. 7. 16.>

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지방보조금(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출 또는 교부받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성격, 지방보조사업자(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비용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되어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제3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2.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3.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의견을 제출할 때
4.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5. 제32조의7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를 결정할 때

④ 지방보조금은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제3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령이나 법령의 명시적 위임에 따른 조례에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2.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이 중복 교부되거나 부적격자에게 교부되지 아니하도록 지원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⑥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교부 신청과 교부 결정 등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